

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

의안 번호	'99-19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5 . 29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■ 제정이유

-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제공과 함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
- 사무의 간소화는 물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 (Costs Less)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

■ 주요골자

-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군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(제4조)
-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 원칙(제6조)
- 사무위탁을 위하여 선정위원회 설치(제6조)
- 수탁기관 선정후 수탁기관과 협약체결(제9조)
- 수탁기관의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시 및 조치와 년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.(제10조, 제12조)

■ 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5조
-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 규정
-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사무민간위탁 제정조례 표준안

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

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

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선정위원회) ①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거창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, 수탁기관 심사.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

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의결한다.

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수탁사무의 처리)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,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.

제9조(협약체결등)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.수탁내용, 위.수탁기간,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0조(지휘·감독)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1조(사무편람)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 처리기간· 처리절차· 처리기준· 구비서류·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